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29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10일→20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25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10.22. 일부개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2.11.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음.
-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롭게 개정된 법 개정 사항을 별표 5에 반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현 행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관련)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개 정 안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종합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현행 법령 및 복무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및 대응 방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0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창의·인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생”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용어의 정비(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3) 인권영향평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변경 전) 학생과 그 부모 → (변경 후)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

라. 입법예고(2025. 5. 1.~5.2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뜻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區)의 △창의·인성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과 △차별금지 대상을 “학생과 그 부모”에서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호에 따른 <u>청소년</u>을 말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u>그 부모 등 보호자의</u>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창의·인성 교육 지원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률과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창의·인성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차별금지 대상에 학생과 부모만을 규정한 것이 자칫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부모 등 보호자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1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YDP생활문화센터가 도림동에 조성됨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를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가능성 있음

-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문구 변경(안 제9조제3항)
- (변경 전)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 (변경 후)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5. 2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2014.1.28.)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區) 생활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

15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과 그 운영을 위한 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도 규정하여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생활문화 활성화 필요 사업과 지원사항 규정
제2조	정의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정의 규정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본 조례 따름
제4조	구청자의 책무	관련 시책 수립,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활동 장려 노력
제5조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제6조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예산의 범위 내 생활문화 사업 지원 - 구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동아리의 활동 지원 -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7조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문화진흥위원회 - 15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 당연직: 소관 국장 - 간사: 소관 부서장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 위원회 대표 및 총괄 부위원장: 위원장 보좌, 직무대행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회의록 원칙적 공개/ 개인정보 등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제10조	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해촉 가능 사유 규정
제11조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문화시설 설치 근거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12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 근거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13조	시설의 이용	이용료, 수강료, 감면기준, 반환기준 등 규정
제14조	업무의 위탁	영등포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가능
제15조	환수 등	지원금 환수 규정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을 근거로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음.
-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5개의 자치구 (강동, 관악, 금천, 노원, 마포)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먼저,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관련해서는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공간 제공, 전문 인력 지원, 네트워크 촉진, 활동 우수사례 발굴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부패 유발 요인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 할 수 있음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법」 제 153조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6조²⁾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이용료, 수강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區)는 舊 도림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개보수)하여 YDP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올 7월 중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임.

1)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2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 및 조성됨에 따라 조례 제3조 관련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현행화

3. 주요내용

조례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표1]의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체육시설에 총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용어 변경

- (변경 전)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변경 후)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조성됨에 따라, [별표1]의 체육시설 현황자료에서 신길책마루 문화센터를 포함한 총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6월 4일부터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 실내 게이트볼장은 옛 신길3동 주민센터 2층에 조성,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은 신길3동 주민센터 신청사에 조성하여 6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임.

[별표] 개정 사항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영등포구 신길로 131(신길동)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7,471㎡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신길동)	237㎡	게이트볼장 1면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	영등포구 가마산로 483 (신길동)	91㎡	실내파크골프장 2타석

-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사람 또는 초등학생/ 사람 또는 중·고등 학생”을 “사람”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u>사람</u> 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u>사람</u> 을 말한다.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건립 및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53조¹⁾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6조²⁾에 의거하여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신규 등재되는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에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포함되어 있음. 두 안건이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것을 고려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사항 및 동의안의 위탁시설 현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여겨짐.

1)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